

環境마크制度(Eco-Labelling)의 環境 및 貿易效果

金 永 生

수원대학교 무역학과

(1998년 8월 14일 접수, 1998년 9월 12일 채택)

Environmental and Trade Effects of Eco-Labelling

ABSTRACT : Eco-labelling programs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However, it has potential trade implications. From the WTO's point of view, environmental measures relevant to eco-labelling should not discriminate between home produced goods and imported goods. Transparency should be guaranteed in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eco-labelling. Developed countries address that eco-labelling of non-product PPM criteria is included in the provisions of TBT of WTO. However, there are more general afraid that non-product PPM-based eco-labelling can be unfairly discriminately trade measures without transparency. Thus, transparency of procedures of eco-labelling, harmonization and mutual recognition of eco-labelling criteria, and technical assistance should be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trade-discriminating effects of eco-labelling.

I. 서 론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는 1988년 유엔총회가 브룬트란트보고서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환경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의 기본개념으로 함에서 비롯된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보호의 수단으로 선진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분명한 환경효과를 가지나 무역왜곡효과도 있다. 특히 선진국의 환경마크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있어 차별적 조치로 작용한다. 환경마크는 기본적으로 생애전주기평가에 근거하므로, 공정 및 생산방식(PPMs)규제문제를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역과 환경의 연계의 관점에서 환경마크에 대한 논의가 WTO, OECD, UNCTAD, ISO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마크의 환경효과와 무역효과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환경마크가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환경마

크의 WTO체제내에서 적용관계를 살펴보고, 환경마크의 무역왜곡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環境마크制度의 의의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¹⁾는 환경친화적 상품임을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도이다. 특정상품이 동일 목적이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표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상품의 매매와 소비를 촉진한다.²⁾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호하게 되므로, 환경마크는 유효한 마케팅수단이 된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생산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수입업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환경친화적 제품을 수입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 환경마크제도는 영어로 Eco-Labelling 또는 Eco-Mark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환경마크라고 하고 있다.

2) OECD, Eco-Labelling : Actual Effects of Selected Programmes, 1997, OCDE/GD/(97)105, PP.9~10

환경마크제도의 분류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SO)의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³⁾

- ① Type I : 제품에 대해 제3자가 환경친화적임을 인증한 것
- ② Type II : 제품의 환경관련 특성을 제조업자 스스로가 선언한 것
- ③ Type III : 제품의 환경관련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종판정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

Type I은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시행되는데 환경마크신청은 자발적이다. 환경마크대상품목선정과 기준은 생산, 유통, 사용, 소비 및 폐기 등 생애전주기(life-cycle)의 모든 단계에 있어, 다른 제품보다 환경친화적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설정된다. Type II는 생산자가 환경친화적임을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됨”, “재활용가능”이라고 표시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인증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의된 기준이나 정의가 없으므로 신뢰성이 약하다. Type III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의 “과학적 인증시스템”(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이 유일한 예이다.

대부분의 환경마크제도는 생애전주기평가(life-cycle analysis : LCA)를 전제로 하는데, 나라별로 생애전주기의 단계별 중요도가 다르다. EU와 네덜란드는 생애전주기 모든 단계를 중시하며, 독일과 일본은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의 환경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LCA는 환경효과면에서는 유효한 접근방법이나, 무역효과면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LCA를 위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에 근거한 기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입국의 국내여건, 환경기준, 우선순위에 입각한 PPMs를 외국에 대해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역제한적이 될 수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1977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20여개국에서 자발적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동환경마크제도로는 EU의 Eco-Label Award Scheme과 북구제국의 Nordic

Swan⁴⁾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더 맑게 더 푸르게”라는 환경표어를 삽입한 환경마크를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⁵⁾

<표 1>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국 가	제 도 명	도입연도
독일	Blue Angel	1977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1988
일본	Eco Mark	1989
북구제국	White Swan	1989
미국	Green Seal	1989
스웨덴	Good Environmental Choice	1990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 NZ	1992
인도	Ecomark	1991
오스트리아	Austrian Eco-label	1991
호주	Environmental Choice	1991
한국	Ecomark	1992
싱가폴	Green Label Singapore	1992
프랑스	NF Environment	1992
네덜란드	Stichting Milieukeur	1992
EU	European Flower	1992
Croatia	Environmentally Friendly	1993

◎ 자료 : UNCTAD, “Eco-Labelling and Market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1994, TD/B/WG. 6/2, BOX 2.

환경마크부여대상 품목으로는 1995년 2월 현재 캐나다 31개, EU 5개, 독일 81개, 일본 65개, 네덜란드 20개, 북구제국 31개가 선정되어 있어, 아직은 광범위하게 대상품목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업체의 신청에 의해 환경마크가 부여된 비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신청업체 중 외국업체는 10%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지금까지 환경마크제도는 국내생산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환경마크 대상품목의 수입비중은 2~3%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국제경쟁이 심해지므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4) Nordic Swan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가입되어 있다.

5) 각국의 환경마크제도에 대해서는 OECD(1997), op. cit., PP.12~36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국의 환경마크제도, 1996 참조

3) OECD(1997), op.cit., P.10

환경마크제도는 대상품목을 개발도상국의 주요수출 품에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는 경향이 있어, 개발도 상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성이 높다.

<표 2> 환경마크 대상품목 및 부여현황
(단위 : 개)

환경마크기준이 설정된 대상품목	환경마크부여			
	품목	신청업체수	(외국업체수)	제품수
캐나다	31	15	116	17
E U	5	1	1	-
독일	81	61	1,058	175
일본	65	63	1,039	22
네덜란드	20	4	10	3
북구제국	31	15	182	19
				-

◎ 자료 : UNCTAD,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spect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Eco-Labelling Programmes, 1995, TD/B/WG, 6/5, BOX 1.

III. 環境마크의 環境效果

1. 환경오염 감소 및 방지

환경마크제도는 특성상 생애전주기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에너지와 원료의 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폐기물 및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며, 재사용율과 재활용도를 증대시킨다.

1995년의 UNCTAD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에서 Blue Angel제도 도입이후 난방연료인 기름과 가스의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및 산화질소의 배출량이 30%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솔벤트함유량이 낮은 폐인트와 니스의 시장점유율이 1%에서 50%로 높아져 솔벤트배출량이 4만톤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⁶⁾ 백조마크의 실시로 스웨덴에

서 펄프생산에 있어 유황배출량이 11%,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21% 감소되었다.⁷⁾

2.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환경마크제도는 국내 공정 및 생산방식의 환경친화성을 촉진한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환경마크를 획득하려면 환경친화적 PPMs가 전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환경친화적 PPMs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라야 수입국의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 환경마크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인 것이 인식되면 장기적으로 마케팅에 있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결국 수입국의 환경기준이 외국 생산국에서의 PPMs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환경마크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방식을 기술적인 면이나 비용면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 만큼 비용이 높게된다. 캐나다의 ECP의 경우, 31개 품목에 대해 환경마크기준이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15개품목만이 환경마크가 인정되었고, 품목에 있어서도 폐인트와 종이류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및 일본에서는 생산방식의 개선이 손쉬운 폐인트, 재활용 종이제품, 재활용 골판지에 환경마크가 집중되고 있다.

3. 환경마크 부착제품의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일본의 경우, 199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53%가 환경마크를 알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며⁸⁾, 싱가포르에서도 인구의 50%이상이 그런라벨마크를 알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캐나다에서는 환경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1993년에 51%였고, 노르웨이에서는 백조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1994년에 66%가 되었다. 독일의 한조사에서 Blue Angel 부착제품에 대한 인식도가 서독쪽에서는 51%, 동독쪽에서는 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독쪽의 소비자들의 37%, 동독쪽의 소비자들의 27%가 더 높은 가격으로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⁹⁾

Eco-labelling Programmes, 1995, TD/B/WG, 6/5, par. 18

7) OECD(1997), op. cit., P.48

8) OECD(1997), op. cit., P.64

9) OECD(1997), op. cit., P.59

4. 지구적 환경문제의 개선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s)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여건차이를 감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MEAs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이나 차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하에서는 수입국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이 설정하는 PPMs기준을 지켜야하므로, MEAs상의 차별적 권리가 무시되어 지구적 환경문제해결방안이 훨씬 강화된다.

5. 환경친화적 제품의 정부조달 촉진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정부조달은 환경마크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구매시 Blue Angel이 부착된 제품만을 고려토록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연방기관들의 구매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관리규약이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친화성 여부를 환경선택프로그램(ECP)에 의한 환경마크부착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IV. 환경마크의 貿易效果

1.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일반적으로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환경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된다. 예를 들면, 백조마크 도입이후 노르웨이에 대한 브라질산 종이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EU가 화장지에 환경마크를 적용하게 되자, 역시 브라질의 펠프업체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¹⁰⁾ 물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마크제도는 자발적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의 수출업체에게는 강제적인 규정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반면, 환경마크부착제품은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시장접근이 가능하고 시장점유율이 높

10) 본고 제V장 참조

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Oxy제품이 미국의 Green Seal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시장진출이 가능하였었다.

2. 차별적 무역효과

선진국의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마크신청과 협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국내과 외국을 차별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선진국의 환경마크 대상품목선정기준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여건과 환경기준에 비추어 높은데, 국내생산자는 개발도상국 생산자보다는 환경마크기준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으므로 외국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외국생산자는 선진국의 환경기준에 적합토록 생산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에 맞게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예를 들면, 터키는 EU환경마크획득을 위해 인도 또는 대만산 염료보다 40~50%가 비싼 유럽산 염료를 수입하여야 하였다. 브라질의 한 침구류 생산업체는 EU의 환경마크획득을 위해 투자금액을 50%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¹¹⁾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시험 및 인증비용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인도의 신발업체들은 네덜란드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시험비용을 50% 증액 지출하였다.¹²⁾

3. 투명성 문제

환경마크제도는 PPMs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환경마크기준설정에 있어, 투명성(transparency)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에게는 무역 장벽이 된다.

환경마크제도의 단계는 ①대상품목의 선정, ②환경마크기준 설정, ③협의, ④공개검토과정, ⑤최종 의사결정과정 및 ⑥정보의 공표·전파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외국생산자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외국생산자가 기준설정의 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관련 정보도 외국생산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외국의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계서, P.15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계서, P.16

업의 경우는 수입국내의 자회사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여케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환경마크 각 단계에 있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정보집중시스템(an international centralized system of information)을 설립하여, 환경마크 프로그램과 외국생산자간에 매개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종의사결정시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평가와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평가와 제안이 최종의사결정시 무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

4. 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

대부분의 환경마크제도가 생애전주기평가에 의하고 있으므로 PPM기준이 설정된다. 그러나 외국제품에 대해 제품무관련 PPM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역제한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생산국의 생산방식에 대하여 수입국이 규제를 실시하면 관할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방편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환경마크기준은 국내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 최우선적이므로 외국생산자들에게 국내환경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인 무역제한요인이 된다.¹³⁾

생산국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환경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생산국에 수입국의 PPMs를 강요하게되면 생산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외국 생산자들에게 환경마크와 관련하여 PPMs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면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신발류에 대한 크롬폐기물처리의 국내요건을 외국생산자들에게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ECP요건을 국내업체에는 일반요건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입제품은 생산국 자체의 PPM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¹⁴⁾

13) OEC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1997, OCDE/GD(97)137

V. 先進國의 환경마크제도가 開發途上國과의 貿易關係에 미치는 影響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개발도상국은 드물다. 우리나라의 Oxy제품이 미국의 Green Seal을 획득한 것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부담이 개발도상국에게는 너무 커서 개발도상국이 환경마크대상품목으로 선진국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도상국 중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이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선진국 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선진국의 환경마크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마크제도의 유효성이 개발도상국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환경마크제도는 개발도상국의 환경마크제도실시를 자극한다.

UNCTAD는 「무역, 환경 및 개발에 관한 특별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설치하고 환경마크가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시장접근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검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UNCTAD의 특별 작업반의 주요과제는 환경마크와 TBT와의 관계, 환경마크제도의 비용문제, PPMs문제, 상호인정 및 동등성문제 등이다.

또한 UNCTAD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UNCTAD의 연구진들은 펠프 및 종이류,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신발류 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와 선진국의 환경마크가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¹⁵⁾

① EU환경마크와 브라질 섬유, 펠프, 신발사업¹⁶⁾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계서, PP. 32~33

15) Simonetta Zarrilli, Veena Jha and René Vossenaar, ed., Eco-Labelling and International Trade, Macmillan Press Ltd, 1997, PP. 9~13

16) Veiga, et al, "Eco-Labelling Schem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Impact on Brazilian Exports," and Abecel, "Eco-Labelling of Tissue and Towel Paper Products in the EU : A Brazilian Perspective," in Zarrilli, op.cit., PP. 5 4~86

EU의 섬유, 펠프 및 종이, 신발류에 대한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EU를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브라질기업으로서는 EU환경마크를 획득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브라질의 중소기업은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생산구조를 조정함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환경마크획득에 필요한 원료인 화학품의 공급자들이 대기업에는 공급하나 중소기업에게는 공급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이다. 수입원자재를 사용해야 환경마크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 브라질은 환경마크기준에 맞는 원면과 원피를 수입하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브라질이 환경마크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EU국가들이 EU환경마크기준을 준수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를 들면, 황산화물(sulfur-dioxide)과 질소산화물(nitrogen-dioxide) 배출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데, EU에서는 발달되어 있으나 브라질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비싼 값을 주고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브라질의 EU국가에 대한 국제경쟁력은 떨어진다.

브라질은 인공조림에 의해 펠프를 생산하므로 지속가능한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EU는 재생종이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브라질에게는 부당하다.

EU의 환경마크기준설정과정에서 브라질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다.

② EU의 환경마크와 개발도상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¹⁷⁾

1996년 EU는 T-셔츠와 침구류에 대한 환경마크기준으로 면화재배 및 섬유제조과정에서 환경친화기준을 강화하였다. 즉, 섬유제조과정에서 용수, 에너지 사용량, 폐수처리, 먼지와 소음 등과 면화재배과정에서 살충제 및 화학물질사용, 염료 및 화학물질 사용량 등에 대한 PPM기준을 설정하였다. EU의 T-셔츠와 침구류는 대부분이 수입품인데, 그중 80%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T-셔츠와 침구류에 대한 이러한 PPM기준적용은 EU역내에서의

환경개선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차별적 무역조치로 작용한다.

독일의 섬유환경마크제도 MUT(Markezeichen Umweltschonenden Textilien)은 공정관련 마크제도이다. MUT는 섬유의 전생산과정에서의 대기오염, 수질 및 토지오염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독일섬유생산업체는 이 기준을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나, 외국기업은 어렵다.¹⁸⁾

③ 네덜란드의 환경마크와 개발도상국의 신발류 산업¹⁹⁾

네덜란드의 환경마크제도인 SMK(Stichting Milieukeur)는 에너지 사용량과 원료사용량을 비롯하여 가죽신발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롬의 하천으로의 배출량, 유기용해제 배출량, 미생물학적인 폐수처리, 가죽폐기물의 재사용 및 안전수송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991년에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신발의 91%가 수입품인데, 대부분이 중국, 홍콩,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수출된다. 따라서 신발에 대한 환경마크기준은 외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차별적 무역조치로 작용한다.

④ 열대목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강제적 환경마크 적용

오스트리아는 1992년 9월 열대수입목재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맞게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7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대목재 주요수출국인 말레이지아는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와 GATT에 제소하고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은 오스트리아에 동조하지 않았다. GATT는 이는 제품무관련 PPMs에 관련된 것이므로, 최혜국대우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1993년 3월에 열대목재에 대한 환경마크제도

18) 이호생, 무역과 환경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PP.47~48

19) Ineke. Giezeman and Frits Verhees, "Eco-Labelling : Practical Use of the Cradle-to-Grave Approach", in Zarrilli, op. cit., PP.195~205

17) Celik Aruoba, "Eco-Labelling in the EU and the Export of Turkish Textiles and Garments," in Zarrilli, op. cit., PP.99~113

에 있어 의무조건을 철폐하였다.

⑤ EU환경마크와 콜롬비아 및 폴란드의 섬유산업

콜롬비아에 관한 유사한 연구는 EU환경마크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콜롬비아는 EU제국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EU의 환경마크기준은 콜롬비아에게는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²⁰⁾

폴란드에 관한 연구는 폴란드의 섬유제품은 대체로 독일의 ECOTEX기준은 충족하는데, EU기준은 까다로와 통과하려면 많은 비용지출이 소요된다고 한다.²¹⁾

VI. 環境마크와 WTO

환경마크제도의 차별적 무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WTO의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이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다. 이에 대하여 WTO의 무역환경위원회(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WTO/CTE)는 「의제 3(b) : 표준, 기술규정, 마크, 포장, 재활용품 환경관련 제품요건과 다자간 무역체계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검토하여왔다. 제품관련 PPMs에 기반을 둔 강제적 및 자발적 환경마크제도는 TBT협정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강제적 규정의 환경마크제도는 TBT협정 제2조(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및 3조(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해당되며, 자발적 규정의 환경마크제도는 TBT협정 제4조(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및 부속서 3(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마크평가절차는 TBT 협정 제5조(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제6조(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제7조(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제8조(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및 제9조(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의 적용을 받는다.²²⁾ 그러나, 제품무관련

20) Lily Ho et al, "The Potential Impact of EU-Labelling Programme on Columbian Textile Exports," in Zarrilli op. cit., PP. 87~98

21) Zbigniew Jakubczyk, "Eco-Labelling Schemes in Poland," in Zarrilli, op. cit., PP. 134~142

22) Vivien Liu, "Eco-Labelling and the WTO

PPMs에 기반을 둔 환경마크제도의 TBT포함여부는 불분명하다.

주요쟁점은 환경마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마크의 TBT협정 적용여부문제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기준을 TBT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차별적 무역효과를 초래하는 잠재적 무역장벽이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은 지구적 및 월경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애전주기평가에 의한 환경마크의 환경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기준을 사용해야 하므로, TBT협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행 TBT협정에 이미 제품무관련 PP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및 EU등은 TBT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ASEAN, 인도, 호주, 일본, 브라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장벽협정에서는 각국은 자국의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에 맞게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장벽협정의 규정은 차별적 무역제한조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금지, 보호주의적 남용금지, 최소무역제한원칙, 무차별원칙, 국내여건에 적합한 경우 국제적 기준의 사용,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등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을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TBT협정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과 표준(standards)의 정의에 이미 제품무관련 PP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TBT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기술규정과 표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술규정 :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식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요건(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Zarrilli, op. cit., 1997, P. 267

○ 표준 :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식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요건(labelling requirements)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 할 수 있다.

상기 두 개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라벨링요건은 환경마크기준이 포함된다. 기술규정상에는 강제적 환경마크제도가 포함되는 반면, 표준규정상에는 자발적 환경마크제도가 포함된다.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당초의 기술장벽협정에서는 제품자체의 특성에 대한 요건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WTO의 기술장벽협정에서는 PPM요건을 포함하게 되었다. 제품의 특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공정과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WTO협정에서 PPMs가 기술장벽협정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TBT협정에 PPMs가 포함된 것은 제품특성을 규제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품관련 PPMs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에 대해서는 WTO가 분명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 또는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제품무관련 PPMs가 TBT협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TBT협정의 기본목적이 제품특성의 규제에 있으므로 제품특성과 무관한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환경마크기준까지 TBT협정이 포함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²³⁾ 제품무관련 PPMs가 TBT협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무역장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환경마크기준설정에 있어 외국생산자에게 실제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기는 어려우므로 차별적 무역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GATT패널이 지금까지 제품관련 PPMs만 인정해오던 원칙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제품무관련 PPMs를 TBT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제품무관련 PPMs를 적용하는 환경마크는 WTO규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국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각국의 환경여

건 때문에 환경기준이 상이해지므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품무관련 환경마크기준을 WTO내에서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996년 12월 WTO의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당초에는 미국은 모든 형태의 환경마크기준은 TBT 협정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각국의 반대가 심하자, “각국은 환경마크의 부여기준설정, 심의절차, 대상제품선정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환경마크의 시장접근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마크는 TBT협정에 포함시켜 TBT협정이 통보규범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각국의 반발이 많았다. EU 및 노르웨이는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WTO 규정의 개정없이 별도의 실제규약(ad hoc code of practice)을 제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들은 자발적 환경마크과 TBT협정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투명성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스위스, ASEAN,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기준설정을 TBT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면, 환경마크의 환경효과는 인정하나 무역효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표명되었다. 또한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환경마크를 TBT협정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각국간 의견대립으로 TBT협정적용여부를 결정짓지 말고 투명성을 증진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TBT협정적용여부에 관계없이 TBT규정상의 통보의무의 중요성은 확인되었다.

VII. 環境마크의 貿易制限效果에 대한 對應策

환경마크제도는 생산과 소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 지구적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수입국의 PPM기준을 적용하므로 차별적 PPMs를 인정하는 MEA협정들보다 더욱 강력하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환경마크 부착상품의 구매가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마크의 무역효과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차별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차별적이다.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외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높은 PPM기준 때문

23) 이호생, 무역과 환경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2, PP. 58~59

는 외국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높은 PPM기준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게된다. 투명성문제에 있어서도 외국은 차별대우를 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차별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마크기준의 TBT협정으로의 수용문제

환경마크는 생애전주기평가에 있어 PPM기준을 설정한다. GATT협정에서는 제품관련 PPMs는 수용하나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미국은 WTO의 TBT협정 적용대상에 환경마크 기준 관련 PPMs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TBT 협정에 제품무관련 PPMs가 포함된다고 하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전술한 실제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한 전술한 GATT패널이 지금까지 제품무관련 PPMs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칙이 무너진다.

결국, 1996년의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환경마크제도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한다고 권고하는 제안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환경마크기준의 TBT협정수용여부문제보다는 각국이 환경마크기준을 자국의 환경여건에 맞게 설정하되,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자발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2. 투명성

환경마크기준이 TBT협정에 수용된다면 국제규범차원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나, 그렇지않은 상황에서 외국생산자는 환경마크대상품목선정, 환경마크기준설정, 전문가참여 공개검토과정, 최종의사결정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수입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참여한다면 투명성 확보가 다소는 보장된다.

WTO/CTE의 10개의제중 투명성에 관련된 의제는 「의제 4 :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환경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국제무역규범」이다. 개발도상국은 기존의 투명성보장절차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로 환경문의처 및 환경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기존의 투명성절차를 강화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WTO 내에 환경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것에 합의하였다. 환경마크에 관련하여서는 국제환경정보교류기구(Global Eco-Labelling Network : GEN)이 1992년에 설립되어 국제적인 정보시스템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강화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각국의 환경마크제도운영과정에 외국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조화와 동등기준의 수용

TBT협정은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설정할 때 가능한 한 기술적 규정을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를 이용함으로서 각국의 기준이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간에 동등(equivalent criteria)기준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호인정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은 수출국에서 획득한 환경마크를 수입국에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국의 수출제품에 수입국의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도 있다. Nordic Swan은 북구제국간에 상호인정하는 제도이다. EFTA(European Free Trade Area)의 “약품의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약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Mutual Recogni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도 있다. 이상의 양제도는 EU와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UNCTAD는 환경마크와 관련 PPM기준이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하므로, 환경마크기준의 상호인정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⁴⁾ 또한 미국과 캐나다간에도 상호인정협의가 진행 중이다. TBT협정 제6조는 각국 중앙정부간의 표준과 기준 등의 상호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ISO에서도 상호인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호인정은 환경목표, 환경목표달성방법, 국가간 상이한 환경여건과 개발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등성(equivalency)을 인정하여야 한다. 상호인정은 쌍무간 뿐만 아니라 다자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제품과 식품의 기준코드로 Codex Alimentarius가 있다. Codex Alimentarius의 기준은 식품첨가물 및 그 함유물, 식품분석과 표본방법, 라벨링, 섭생법, 식품수출입, 검사제도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 각종 기준은 식량농업기구

24) UNCTAD, "Eco-Labelling and Market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1994, TD/B/WG, 6/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이 주로 제공한다. Codex Alimentarius 위원회에는 1993년 현재 144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하고 있다.²⁵⁾ 자발적인 국제기준으로 WHO는 음용수의 품질기준과 대기품질에 관한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화학제품교역 윤리강령(Code of Eth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Chemicals)은 화학제품의 교역의 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인정제도는 환경효과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무역왜곡효과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5. 국제적 환경마크제도의 확산

개별국가별로 환경마크를 도입하는 것은 투명성과 무역차별에 있어 불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있다. 국제적으로 설정되는 환경마크의 경우는 이러한 결점이 보완된다. 국제적인 환경마크로는 “Projekt Tropenwald”와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²⁶⁾이 있다. Projekt Tropenwald는 독일삼림협회와 목재수입업자들이 합동으로 삼림보호목적으로 설립한 환경마크제도이다. 환경마크기준은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 ITTO)의 지침에 따른다. 이를 환경마크제도가 생산자에게 수용되도록 검사과정에 대해 생산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시험기관도 수출국의 시험기관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Forest Stewardship Council은 삼림보호를 위한 여러 환경단체와 정부의 삼림기구, 각국의 삼림인증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하였다. FSC의 목적은 삼림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삼림인증제도의 인증인(certifier)이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마크 또는 인증제도를 확산시킴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마크기준설정시 국제수준에서의 기준과 상이한 각국의 환경기준을 가능한 한 수용하

여야 한다.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TBT협정은 기준 또는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는 타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품과 공정에 대한 시험과 검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ISO는 검사인력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지원방법에는 선진국의 검사기관의 지부를 세계각지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의 UL(Underwriters' Laboratories)는 90개의 지부를 세계에 두고 있다. EU국가의 컨설팅회사들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마크와 관련하여 증명을 하고 있다.

7. ISO의 환경마크표준화 작업

ISO의 국제환경표준화작업은 방법과 전달규격에 한하며, 기준이나 수준의 설정에 관련하지 않는다. 따라서 ISO표준은 조직체의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평가감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관리기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마크와 관련하여서는 ISO는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제조공정, 환경영향 등을 검토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환경영평가는 생애전주기분석(LCA)에 의하므로, PPMs가 적용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게는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LCA의 평가기준설정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내에서 환경영평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VIII. 결 론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오염 감소 및 방지, 환경마크 부착제품의 소비자선호도 향상,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제품의 정부구매 촉진 등에 있어 환경효과가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 미부착제품의 경쟁력 약화, 실질적인 무역 차별화, 투명성의 불명확, PPMs문제 등 무역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환경마크제도가 생애전주기 평가에 의하고 있으므로 PPMs 관련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제품에 대해 제품무관련 PPMs 관련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무역제한적이 될 소지가 크다. 또한 환경마

25) Laura B. Campbel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 Their Role in the Mutual Recognition of Eco-Labelling Schemes," in Zarrilli, op. cit., 1997, PP. 318~327

26) Veena Jha et al., "Eco-Labelling Initiatives as Potential Barriers to Trade : A Viewpoint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Zarrilli, op. cit., 1997, P. 286

크기준은 국내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 최우선적이므로 외국생산자들에게 국내환경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인 무역제한요인이 된다. 생산국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환경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생산국에 PPM기준을 강요하게 되면 생산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외국생산자들에게 환경마크와 관련하여 PPM기준을 적용하면 무역차별을 야기한다.

제품관련 PPMs에 기반을 둔 강제적 및 자발적 환경마크제도는 WTO의 기술장벽협정(TBT)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품무관련 PPMs에 기반을 둔 환경마크제도의 TBT포함여부는 불분명하다. TBT협정의 기본목적이 제품특성의 규제에 있는데,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환경마크기준까지 TBT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따라서 환경마크의 무역왜곡효과를 상쇄내지 갑축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환경마크기준의 조화와 상호인정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마크획득을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인환, 이덕길,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7.
2. 김준환,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환경라벨에 관한 국제표준체정동향과 대응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96-05, 1996.5.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진국의 환경장벽(I)』, 1994.
-----, 『주요국의 환경마크제도』, 1996.
5.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7.
6. 오호성, 『환경경제학』, 법문사, 1997.
7. 이동걸, 『무역과 환경-조화와 충돌의 선택-』, 산업연구원, 1995.
8. 이호생, 『무역과 환경: GATT/WTO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무역과 환경의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9.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WTO, OECD의 무역환경 논의 동향』, 1995.
10. 한상욱,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동화기술, 1995.
11. 한택환,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2. 환경부 국제협력관, 「환경 무역 연계 최근 논의 동향」, 1997
13. Brown, Lester R., *State of World 1997*, Worldwatch Institute, 1997.
14. Esty, Daniel C., *Greening the GATT,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15. Falkman, Edwin G.,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 Business Perspectives,"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6.
16. GATT,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Report of the Meeting held on 12 July 1994, PC/SCTE/M/2, 3 August 1994.
17. OECD,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1994.
-----, *Trade and Environment: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1994.
- , "Trade Principles and Concepts," OCDE/GD(95)141, 1995.
-----,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OCDE/GD(95)124, 1995.
-----, "Report on Trade and Environment to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OCDE/GD(95)63, 1995.
-----,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larifying the Concepts," 1997.
-----, "Eco-Labelling: Actual Effects of Selected Programmes," OCDE/GD(97)105, 1997.
18. UNCTAD, "Eco-Labelling and Market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1994, TD/B/WG, 6/2
-----,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spect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Eco-Labelling Programmes," 1995, TD/B/WG, 6/5
-----, "A Statistical Overview of Selected Eco-Labelling Schemes," 1995, TD/B/WG, 6/Misc. 5
20. WTO/CTE, "Eco-Labelling Programmes," G/TBT/W23, 1996
21. Zarrilli, Simonetta, Veena Jha, Rene Vossenar(ed), *Eco-Labelling and International Trade*, Macmillan Press Ltd, 1997.